더 특별한 전북교육
학생중심 미래교육

소통과 존중으로 함께 성장하는 즐거운 학교

2024학년도 교육과정설명회
학부모 교육 자료(1학기)

2024. 3.

한솔초등학교

〈차　　례〉

1. 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대응 방안 ····· 1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 2
3. 공교육 정성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 5
4. 교권보호 이해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 6
5.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 ····· 9
6. 에듀페이 ····· 11
7. 감염병 예방 교육 ····· 12
8. 비만 예방 교육 ····· 14
9.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 15
10. 약물 오남용 예방(마약 예방) ····· 16
11. 미세먼지 대응 방안 ····· 17
12. 교육과정 성찰 중심 학교평가 ····· 18
13. 교육과정 중심 학생평가 ····· 19
14. 한글책임교육의 이해 ····· 20
15.「똑똑! 수학탐험대」이용 안내 ····· 21
16.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안내 ····· 22
17. 학생봉사활동 ····· 23
18. 2022개정교육과정 ····· 24
19.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학교 운영 ····· 25
20. 학교폭력예방교육 ····· 26
21.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 28
22.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 30
23.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 32
24. 부모님과 함께하는 양성평등교육 ····· 33
25. 학부모 인성 인권 교육 ····· 34
26.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 35
27. 가정폭력 예방교육 ····· 37
28. 개인정보 보호 ····· 39
29. 정보통신 윤리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 40
30.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안내 ····· 41
31.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 42

1. 의무교육단계 미인정결석 대응 방안

1 의무교육 단계 미인정결석 관리·대응 흐름도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의무교육단계 취학이행 및 독려를 위한 지침(2023.12.)

시기	주요 점검 사항	조치 필요 사항	비고
결석 당일 (1~2일)	■결석 사유 확인 및 출석 독려	■ 담임교사는 유선연락으로 소재,안전 확인 및 결석사유 확인과 출석 독려	■미인정결석 일수는 수업일수 기준 연속되는 경우임
3~9일	■결석이 지속되는 경우 가정방문 실시	■ 가정방문 시 교직원과 학생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 사회복지 전담직원 등과 함께 실시 가능 ※ 필요 시 학생 거주지 관할 경찰서에 협조 요청	
	■가정방문에도 결석이 지속되면 보호자아동 내교 요청	■ 학교장은 보호자와 학생 면담 시 출석 독려 및 미인정결석 사유 파악 ※ 아동학대가 의심되는 경우 경찰 아동보호 전문기관에 즉시 신고하고, 필요 시 의무교육 관리위원회를 통해 출석 독려 가능	
10일	■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 등록(담임) ■ 미인정결석학생 정보 나이스제출(담당)	■ 미인정결석학생 등록 제출(나이스) - 초중학교(10일)->나이스 등록, 제출 ※ 취학의무 미이행자 중 집중관리대상자는 학교장이 선별지정 ※ 집중관리대상자는 관리카드 스캔하여 나이스 첨부 또는 시스템 입력	■ 소재안전이 확인되지 않거나 아동학대 징후가 발견되는 즉시 경찰에 수사의뢰 후 나이스 등록.제출
10일 이후~	■월 1회 미인정결석 학생 소재, 안전 확인 및 보고 ■ 복귀 관리 ■ 유예, 면제처리	■학교는 나이스에 등록된 미인정결석학생이 복귀하기 전까지 '매월'소재(안전) 확인 후 나이스 소재여부확인일자와 비고 등을 수정하여 제출(담임, 담당자) ■미인정결석학생이 의무교육관리위원회에서 유예, 면제 처리된 경우 유예, 면제 승인완료일자를 복귀일자로 입력하여 미인정결석학생관리 종료 -나이스학업중단의 '취학관리전담보고관리'에 유예, 면제자 등록하여 연 2회 이상 소재, 안전 확인(관리) ※ 유예 처리 시 소재, 안전 확인이 안 된 경우 집중관리학생으로 지속관리	■ 집중관리 대상자에 대하여 관리카드를 마련하여 '매월 ' 소재(안전) 확인 등 지속 관리

※ 모든 취학관리 대상은 18세 미만까지 관리함(아동복지법 제3조 "아동의 정의"를 준용함)

※ 모든 취학관리 대상 중 소재 불분명, 아동학대 의심, 반복적 미인정결석 등의 학생은 미인정결석 일수와 상관없이 집중관리함

- 거주지.소재 불분명, 연락두절 등 안전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가정사정.외부격리 등의 사유로 아동학대가 우려되는 경우
- 심약.정서불안.건강 등의 사유로 전문기관의 지속적인 보호.관리가 필요하나 가정형편상 보호관리받지 못하는 경우
- 반복적 미인정결석으로 교육적 방임이 의심되거나 학업중단이 우려되는 경우
- 기타 학교장(교육장)이 집중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교육장은 모든 취학관리대상에 대해 수시로 소재안전확인 상황을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2.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및 출결

-해당년도 초등학교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교육부), 도교육청 출결지침, 본교 교칙, 학업성적관리규정을 근거로 함

1 학교장 허가 교외체험학습

가. 기간 및 횟수: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학칙이 정한 범위(15일)

나. 내용: 현장체험학습, 친인척 방문, 가족동반 여행, 고적 답사 및 향토행사 참여 등

- 감염병 위기 경보 단계가 **'심각' 단계인 경우에 한해 교외체험학습 승인(허가) 사유에 '가정학습'** 인정

※ 위기경보 수준은 '23.6.1.일자 이후 「심각」 → 「경계」로 하향 조정하여 대응중

※ 정상적인 교육과정 이수에 지장을 주는 과도한 체험학습 허가 자제

다. 방법: 교외체험학습 신청(신청서 및 학습계획서 제출) → 학교장 심사 후 승인 통보 →교외체험학습 실시 → 교외체험학습 보고서 제출 →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

※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48조제5항에 따라 학교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학칙이 정하는 범위안에서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하여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학교생활기록부의 어느 항목에도 내용을 입력하지 않음

※ 1일 외에 필요시 반일(4시간)도 운영 가능

2 출석 인정 결석

가. 지진, 폭우, 폭설, 폭풍, 해일 등의 천재지변 또는 법정 감염병 등(학교 내 확산방지를 위해 학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법정 감염병을 포함)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나. 병역관계 등 공적의무 또는 공권력의 행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다. 학교장의 허가를 받은 '학교·시도(교육청)·국가를 대표한 대회 및 훈련 참가, 산업체실습과정(현장실습, 현장실습과 연계한 취업),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 「학교보건법」 제8조에 따른 등교중지' 등으로 출석하지 못한 경우

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에 따른 학교 내의 봉사, 사회봉사, 특별교육이수 기간

마. 「초·중등교육법」 제28조제6항에 따른 상담, 진로 프로그램 등 숙려제 참여 인정 기간

바. 다음의 경조사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한 경우

구 분	대 상	일 수
결 혼	◦ 형제, 자매, 부, 모	1
입 양	◦ 학생 본인	20
사 망	◦ 부모, 조부모, 외조부모	5
	◦ 부모의 조부모(증조부모, 외증조부모), 부모의 외조부모(진외증조부모, 외외증조부모) ◦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3
	◦ 부모의 형제·자매 및 그의 배우자	1

※ 경조사 일수에 재량휴업일과 공휴일 및 토요일은 산입하지 않음.

3 출석 인정 외 결석

가. 질병으로 인한 결석

- 결석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의사 소견서, 진료 확인서 등으로 병명, 진료기간 등이 기록된 증빙서류)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 상습적이지 않은 2일 이내의 결석은 결석한 날부터 5일 이내에 질병으로 인한 결석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학부모 의견서, 처방전, 담임교사 확인서 등)를 첨부한 결석계를 제출

나. 미인정 결석

1) 합당하지 않은 사유나 고의로 결석한 경우: 교외체험학습 가능일수 초과, 태만, 가출, 고의 출석 거부, 범법 행위로 인한 책임있는 사유로 관련기관 출석·체포·도피·구속·교도소 수감 등
2)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제1항제6호에 따른 출석정지
3)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4)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출석정지
5)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31조(학생의 징계 등) 제6항의 가정학습 기간

다. 기타결석(*결석계 및 증빙서류 제출)

1) 부모가족 봉양, 가사 조력, 간병 등 부득이한 개인사정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2) 공납금 미납을 사유로 결석한 경우
3) 기타 합당한 사유에 의한 결석임을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4 지각, 조퇴, 결과

가. 지각: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까지 출석하지 않은 경우

나. 조퇴: 학교장이 정한 등교시각과 하교시각 사이에 하교한 경우

다. 결과: 수업시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불참하거나 교육활동을 고의로 방해한 경우

라. 지각, 조퇴, 결과의 사유는 각각 결석 사유와 같게 질병, 미인정, 기타로 처리

마. 같은 날짜에 지각, 조퇴, 결과가 발생하면 학교장이 판단하여 어느 한 가지 경우로만 처리

한솔초등학교 학업성적관리규정 제15조(출결상황 관리)

① 여학생 중 생리통이 극심해 출석이 어려운 경우(월 1일 결석)에는 출석으로 인정한다. 생리통으로 인한 지각, 조퇴, 결과 3회를 결석 1일로 산정한다.
② 1교시 시작시간까지 등교하지 않으면 지각으로 처리하고, 해당 학년의 하교시간 전에 하교하면 조퇴로 처리하며 수업시간 40분 이상 참여하지 않으면 결과로 처리한다.
③ 10회 이상 반복적인 지각·조퇴·결과는 특기사항에 사유를 입력할 수 있다.
④ 장기결석은 같은 종류로 연속하여 출석하지 않은 경우로 그 기간은 7일로 한다.
⑤ 병원학교 및 원격수업 등 정보통신매체를 이용하여 수업을 받는 건강장애학생의 평가는 평가 당일 학교에 출석함을 원칙으로 하며, 부득이한 경우의 성적처리는 제9조(교과학습발달상황)에 따른다.
⑥ 학생선수의 출결에 대한 사항은 생기부기재요령에 따른다.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0조(출결처리)

1. 학생이 출석하여야 할 날짜에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결석으로 처리한다.
2.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출석으로 처리한다.
   가. 천재지변, 법정감염병 등
   나. 학교장의 승인을 받은 각종 대회 및 행사 참여
   다. 전출·입으로 인한 소요 일수

라. 현장체험학습 및 교환학습으로 인하여 출석하지 못하는 경우
(교외체험학습 : 연간 30일 이내, 교환학습 : 연간 1개월 이내)
마. 가족 및 친·인척의 경조사로 인한 결석 일수(학교생활기록부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함)
바. 기타 학교장이 인정하는 경우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0조의2(출석 독촉·경고 및 통보)

1. 정당한 사유 없이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는 아동에 대해서는 가정(보호자)에 출석을 독촉하거나 의무교육을 받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경고한다.
2. 제1항에 따라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에는 해당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동의 장에게 동행을 요청할 수 있으며, 필요하면 해당 아동이나 학생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3. 제1항에 따른 독촉 경고 후 7일이 경과하여 2회 이상 독촉 경고하여도 그 상태가 계속되는 경우에는 거주지의 동장 및 교육장에게 각각 통보한다.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수업일수)

1. 이 학교의 수업일수는 매 학년 190일이상으로 한다. 다만 학교의 장은 천재지변이나 연구학교의 운영 또는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자율학교의 운영 등 교육과정의 운영상 필요한 경우 10분의 1의 범위 안에서 수업일수를 감축할 수 있으며, 수업일수를 감축한 경우 다음 학년도 개시 30일 전에 관할청에 보고해야 한다.
2. 1항의 규정에 따라 매 학년도의 수업일수를 정할 때에는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3. 외국에서 귀국한 학생의 경우에는 제출한 증빙서류에 따라 해당 학년의 수업일수를 산정한다.
4. 학교의 장은 교육상 필요한 경우 보호자의 동의를 얻어 교환학습, 교외체험학습을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학교의 장은 본교 체험학습 규정에 의거 이를 수업으로 인정할 수 있다.
5.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6.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7. 기타 교환학습 및 교외체험학습 운영 방침은 본교 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에 의한다.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의 2(체험학습 운영 세부규정)

1. 본교 개인교환학습 인정기간은 (1개월 이내), 단체교환학습은 (2주 이내)로 한다.
2. 교외체험학습 출석인정 일수는 공휴일, 방학, 재량휴업일을 제외한 연 15일 이내로 한다.
3. 관찰, 조사, 수집, 현장 견학, 답사, 문화체험 등의 일반 교외체험학습은 연 15일 이내로 사용가능하며, 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 시 교외체험학습 승인사유에 '가정학습'을 포함하여 연 30일 이내로 사용할 수 있다.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의 3(운영절차)

1. 학생이 다양한 체험활동을 하고자 할 때 반드시 보호자의 책임 하에 실시한다.
2. 교환학습(개인,단체)은 학부모의 교환학습 신청→ 관련 학교장 상호 협의→협의사항 학부모에 통보→교환학습 실시→위탁학교 생활기록을 재적학교에 통보→교환학습 보고서 제출의 절차로 운영한다.
3. 교외체험학습은 학생·보호자가 교외체험학습 실시 3일 전(감염병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의 경우 전일)까지 신청서를 담임교사에게 제출하여 학교장의 사전 허가를 받은 후 실시하며, 체험학습 종료 후 신청서의 체험 내용을 바탕으로 학생이 직접 보고서를 작성하여 7일 이내에 제출한다. 단, 학교장이 인정한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신청서 및 보고서 제출기한 예외 인정 가능하다.
4. 학교는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면담 등을 통한 사실 확인 후 출석으로 처리하며 신청서 및 보고서, 기타 증빙서류는 취합하여 5년 간 보관한다.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의 4(교외체험학습 형태) 가족동반여행, 친인척 방문, 답사·견학활동, 체험활동 등이 있으며 위기경보 '심각,경계' 단계에 한하여 가정학습을 포함한다.

한솔초등학교 학교규칙 제11조의 5(체험학습 불허 사항)

① 도교육청 체험학습 승인불가 사항
② 기타 학교에서 비교육적으로 판단되는 학교 밖 활동

제11조의 6(미인정 결석 처리) 다음의 경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한다.

① 「학교생활기록 작성 및 관리지침」에 의거 미인정 결석으로 처리되는 사항
② 사전 허가된 기간을 초과하여 체험학습을 실시했을 경우
③ 사전 신청내용과 다르게 허위로 체험학습을 추진하는 경우

3.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

1 공교육정상화법 제정 배경

▣ **선행학습 위주의 과도한 사교육의 폐해 방지**

- 학부모의 제적 부담, 정상적 학교 수업 방해, 전인적 교육을 위한 교육목적 방해

▣ **학교내 선행학습 유발행위인 교육과정 운영과 평가의 문제점 개선 근거 마련**

- 선행학습(사교육 경험)을 전제로 한 학교 수업
- 교육과정을 벗어난 범위와 수준에서의 시험출제

2 공교육정상화법의 목적

제1조(목적) 이 법은 「초·중등교육법」에 따라 공교육을 담당하는 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도록 하기 위하여 교육관련기관의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을 유발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교육기본법」에서 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고 학생의 건강한 심신 발달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3 선행교육 및 선행학습의 폐해

▣ **다른 학습자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 침해**

❍ 학생이 수업 내용을 미리 알고 있으면 학생 자신은 학교 수업의 적극성이 모자라고 교사는 학생들이 이미 알았다고 판단하여 기본개념을 충분히 설명하지 않고 넘어가는 악순환으로 인한 다른 학생의 학습권과 교사의 수업권이 침해받게 됩니다.

▣ **사고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의 저하**

❍ 학교 교육과정은 학생의 인지, 정서 및 사회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고려하여 구성되어 있으나 발달 단계와 사고의 수준을 넘어서는 내용의 학습으로 충분히 사고하고 이해하려는 자기주도적 학습 능력이 떨어져 피상적이고 기계적인 문제풀이 학습에 치우치게 되어 사고력, 흥미도 및 집중력 저하 등 다양한 문제를 파생시키게 됩니다.

▣ **남보다 앞서 나가기 위한 지나친 속도 경쟁**

❍ 선행학습을 하는 내용이 곧 그 학생의 실력이라는 잘못된 편견(예: 초등학교 6학년 학생이 중학교 1학년 수학을 하고 있으면 중학교 2학년 수학을 공부하는 학생이 더 잘한다는 의식)으로 인하여 선행학습은 무한 속도 경쟁에 내몰리고 있으나 사고력 저하로 대학입시에서는 좋은 성적을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 **학부모의 과도한 사교육비 부담**

❍ 통계청이 발표(2020.3.10.)한 2019년 유·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총액은 약 18조 원으로 이는 사회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저출산과 노후 준비를 못 하는 등 에듀푸어 양산은 중산층 붕괴를 가속화로 이어져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4. 교권보호 이해 및 교육활동 침해 예방교육

1 교권이란

▣ 교사가 **외부의 부당한 지배나 간섭 없이 자유롭게 교육활동을 할 수 있는 권리**
(교육과정 편성권, 교육내용 결정권, 교육방법 결정권, 평가권, 학생 지도권 및 징계권)

2 교권침해란?

교원이 정상적인 교육활동과 관련하여 학생·학부모·보호자 등에 의한 폭언·폭행·성희롱·명예훼손·협박·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인해 교육할 권리를 침해받는 것을 말함

3 교권침해 유형과 실태

가. 교권침해 유형

구 분	교권침해 유형
학생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교사 성희롱, 수업 진행 방해, 지시 불이행, 재물손괴, 사이버 매체 폭력
학부모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폭언 및 욕설, 부당한 인사 조치 요구, 고소.고발, 안전사고(민원 제기, 신분 위협, 무리한 피해 보상 요구)
교육행정기관, 학교행정관계자, 동료교사	교원에 대한 폭언, 교원에 대한 폭행, 교원에 대한 협박

나. 교권침해 현황 실태 분석 결과

○ 교권침해 유형 중 폭언·욕설 건이 많아 사전 예방을 위한 바른 언어사용 교육과 침해사안에 대한 엄중한 처벌 및 신속한 대처가 필요함
○ 학생에 대한 올바른 인권교육 및 예절교육이 강화되어야 함
○ 교권보호를 위한 교권보호지원센터의 법률지원 및 상담으로 교권침해 피해교원에 대한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함

4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개념

「교원의 지위 향상 및 교육활동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15조제1항

1. 「형법」 제2편제25장(상해와 폭행의 죄), 제30장(협박의 죄), 제33장(명예에 관한 죄) 또는 제42장(손괴의 죄)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
2.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성폭력범죄 행위
3.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의7제1항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행위
4. 그 밖에 교육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행위로서 교육활동을 부당하게 간섭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교육부고시 제2019-203호) 제2조

1. 「형법」 제8장(공무방해에 관한 죄) 또는 제34장제314조(업무방해)에 해당하는 범죄 행위로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행위
2.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3.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4. 그 밖에 학교장이 「교육공무원법」 제43조제1항에 위반한다고 판단하는 행위

5 교육활동 침해행위의 유형과 사례

□ 폭행·상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교원의 신체를 밀치거나 머리카락을 잡아당기거나 잡아서 흔드는 경우

○ 큰소리로 폭언을 하여 피해교원이 정신을 잃고 쓰러지게 하고, 우울병 등으로 6주간의 치료를 요하게 한 경우 등

□ 협박(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위험한 물건을 교원의 목에 겨누면서 찌를 것처럼 위협한 경우

○ 피해교원에게 학교폭력을 은폐한 사실을 기자와 교육청에 말하겠다며 위협한 경우

□ 모욕·명예훼손(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학부모가 다른 학부모들과 함께 있는 자리에서 특정교원의 외모를 지칭하며 경멸적으로 말하는 경우

○ 다른 학부모들에게 '담임교사가 학부모로부터 돈을 받았다'라고 근거 없는 허위사실을 이야기 하는 경우

□ 손괴(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1호)

○ 이물질을 담임교사 차량의 에어컨 배기구에 부어 손상을 입힌 경우

○ 담임교체를 요구하며 교실에 있는 유리창을 주먹으로 쳐서 깬 경우

□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의한 성범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2호)

○ 학부모가 담임교사와 상담 시 허리, 종아리, 허벅지 등 일반인의 시각에서 접촉이 꺼려지는 부위를 고의로 접촉하는 경우

○ 휴대전화 카메라 등을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교원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경우

□ 정보통신망법에 따른 불법정보 유통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3호)

○ 불특정 다수가 볼 수 있는 인터넷 카페 자유게시판에 "담임교사가 학생들을 폭행, 학대하고, 이를 따지는 학부모에게 욕설과 협박을 했다"는 허위사실을 해당 교사가 누구인지 알아볼 수 있게 게시한 경우

○ 담임교사에게 불만을 품고, 새벽시간을 포함한 수 일 동안"죄를 피하지 못할 것이다. (교사의) 자손들이 장래 불행할 것이다"라는 등의 저주가 담긴 문자메시지를 수십여 차례 보내 교원에게 공포심이나 불안감을 유발한 경우

□ 공무집행방해 / 업무방해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호)

○ 학생의 아버지가 자신의 아들을 괴롭힌 학생을 혼내준다며, 수업 중인 교실로 들어가 관련학생들을 교실 밖으로 불러내 무릎을 꿇게 하고, 이를 만류하는 교사를 협박하여 수업 진행을 방해한 경우

□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해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 체육교사에게 '수업시간에 야외 체육활동을 하지 말고 자습을 시키라'고 반복적으로 요구하는 경우

○ 시험 평가에 관하여 교사에게'시험범위를 줄이라', '시험문제를 왜 이렇게 어렵게 내냐? 쉽게 내라'라며 반복적으로 요구·간섭하는 경우

□ 교육활동 중인 교원에게 성적 언동 등으로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행위 (교원지위법 제15조제1항제4조, 교육부 "교육활동 침해 행위 고시")

○ 학교에서 자녀 상담을 하던 학부모가 성적인 비유와 농담을 반복적으로 하여 담임교사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6 교권보호위원회 설치 운영

□ **기능** : 교권보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 교육활동 침해 기준 마련 및 예방 대책 수립
- ○ 교육활동 침해 학생에 대한 조치
- ○ 교육활동 침해 보호자 등에 대한 조치
- ○ 교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 ○ 그 밖에 교육장이 교원의 교육활동 보호를 위하여 지역교권보호위원회의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7 교권침해 대응 절차

가. 학교에서의 대응

절 차	대응 요령	유의 사항
사안 발생 및 학교 대응	○ 사고 현장 탈피 및 주변 교사에게 도움 요청 ○ 사안 발생 후 학교장에게 즉시 보고 ○ 학교장은 사안 인지 즉시 적극 개입	○ 목격자 진술, 현장 증거 확보 ○ 학교장 중심 대응팀 구성 ○ 긴급 상황 시 112, 119등에 신속히 신고
↓		
사안 발생 즉시 보고	○ 초.중학교 ⇨ 교육지원청 ⇨ 도교육청 ○ 고등학교 ⇨ 도교육청(교원인사과) ○ 교권보호 담당자 ☎ 239-3299	○ 교원에 대한 신체 폭행, 흉기 소지 협박 및 위협 등 중대 사안은 즉각 전화 보고, 단, 가벼운 사안은 학교 처리 ○ 교육지원청은 도교육청에 사안 보고 및 교권보호 변호사 등의 지원을 받아 학교 현장 지원
↓		
피해 교원 보호 조치	○ 폭행 파해 등 긴급 상황 발생시 112, 119등에 신고 ○ 학교장 피해교원 상담 및 안전조치 - 학교장 판단하에 병가 또는 심각한 경우 질병 휴직 활용 안내	○ 추가 피해 발생 방지 및 피해 교사 업무 대행자 지정 ○ 잘못된 사실관계 언론 공표 보안 유지 ○ 가해가 심할 경우 휴직, 비정기 전보 요청
↓		
사안 처리 경과 보고	○ 동기, 내용, 시기, 관련자 등 조사 ○ 가해자와 피해자 양측 면담 실시 ○ 증거 자료 확보 ○ 피해자 의견 확인(법률.행정적 처리 및 학생 징계 여부, 보상 요구 등) ○ 사안 조사 내용 바탕으로 육하원칙에 따른 상세 보고 ○ 보고 절차는 상급기관 보고와 동일 ○ 필요한 경우(학교장 판단) 사안 처리 완결 시까지 수시보고	○ 사고 경위 파악 및 일지 기록 - 가벼운 경우 – 학교 내 교육적 지도 - 심각한 경우 – 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학생에 의한 교권 침해 경우 - 학부모에게 통지, 교사에게 사과 유도 - 선도위원회 개최 및 상담을 통한 교화 ○ 교직원에 의한 교권침해 경우 - 교육지원청과 협의 후 행정적 조치 - 상급기관 보고 ○ 학생 안전사고 관련 교권침해 - 전라북도 학교안전공제회에 지원 요청
↓		
조정 및 법적 대응	○ 피해 교원의 의사를 최대한 존중 ○ 교권을 심각하게 훼손한 중대 사안이라고 여겨지면 교육장이 고발	○ 교권보호 법률지원단(교권보호 법률 지원 고문변호사) 자문 ○ 교원과 학생.학부모 간 분쟁 발생 시(미해결 시 도교육청 협조 요청) ○ 전라북도교권보호위원회 개최
↓		
종결 및 후속조치	○ 재발 방지를 위해 사고 원인 분석 및 대응 방안 마련 ○ 사고 관련자들의 안정적 복귀 지원 ○ 우선 전보	○ 지속적인 관찰을 통한 재발 방지 ○ 가해자, 피해자 상담 및 치료

5. 부정부패 방지 및 청렴 교육

1 청탁금지법과 부정청탁의 이해

▣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

▣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 등(유·초·중·고등학교 교직원, 사립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 공직자 등의 배우자, 각종 위원회에 참가하는 민간위원(학교운영위원회 위원,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 국**민입니**다**.

▣ **부정청탁의 금지**

▶ **'입학, 성적, 수행평가 등 학교업무의 처리·조작'**은 부정청탁 금지 행위 14가지 중 한 가지입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이해당사자
⇨ 1천만원 이하

제3자를 위하여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자(민간인)
⇨ 2천만원 이하

제3자를 통해 공직자등에게 부정청탁을 한 공직자등
⇨ 3천만원 이하

부정청탁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 공직자등

⇨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 형사처벌

▣ **금품등의 수수 금지**

▶**누구든지 공직자등 또는 그 공직자등의 배우자에게 수수 금지 금품등을 제공하거나 약속 또는 의사표시를 해서는 안됩니다.**

▶ 위반 시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백만원 이하의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배우자가 수수한 금품 등을 신고하지 않은 공직자등
***금품 등을 공직자 또는 공직자의 배우자에게 제공한 자**
⇨ 수수금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

직무관련 여부 및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 1백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 3백만원 초과 금품 등을 수수한 공직자등
⇨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과태료 / 형사처벌

※ 그 외 자세한 내용은 **국민권익위원회 홈페이지/부패방지/부패방지자료/청탁금지법**에서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탁금지법 위반 사례 발생 시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쪽 참고)

2 촌지와 불법찬조금 유형

가. 촌지 유형

○ 현금 및 상품권, 고가의 명품 가방 등
○ 최근 카카오톡 선물과 같은 SNS 상품권 등

나. 불법찬조금 유형

○ 학부모대표 등이 학교운영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치지 않고 학부모들로부터 일정액을 모금, 접수하는 경우
○ 간부학생 등의 학부모를 중심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학교발전기금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정상적으로 회계에 편입하지 않고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운동부, 기숙사 등에서 임의로 접수 및 운영하는 사례
○ 학부모를 대상으로 학부모회, 학급임원회 등에서 개별적인 접촉 또는 전화 등을 통해 학생간식비, 학교행사 지원, 교직원 선물비 등의 명목으로 일정 금액을 할당하는 사례
○ 기타 법령이나 학교발전기금의 목적을 벗어나는 기부행위

3 촌지수수 및 불법찬조금 신고센터 운영

▶전라북도교육청 신고센터
◦홈페이지(www.jbe.go.kr)/전자민원/원클릭신고센터/촌지수수.불법찬조금신고
◦촌지수수 신고(☎ 063-239-3300 교원인사과)
◦불법찬조금 신고(☎ 063-239-3576 예산과)

4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 대책

가. 학습부교재 관련 부적정 사례(예시)

o 학습부교재를 학교에서 강매한 경우
- 부교재를 일괄 구입하여 활용하는 행위 포함

o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치지 않고 부교재를 채택한 경우
- 학습부교재는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에서 사용 가능(정규 수업시간에는 사용 불가함)

o 학습부교재를 특정 장소에서 구입하라고 안내하는 경우
o 학습 부교재 선정과 관련하여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금품 .물품.향응.기타 이와 유사한 경제적 이익 제공받은 경우
o 학교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친 부교재의 채택 대가를 받은 경우
o 방과후 학교 교육활동 관련 실기 재료를 구입한 대가를 받은 경우
o 학교에서 어린이 신문 등을 일괄 구독하고 대가를 받은 경우
o 기숙사가 있는 학교에서 교사가 학생들에게 돈을 걷어 부교재를 사주는 경우

나. 학습 부교재 리베이트 근절을 위한 조사.감사 실시

o 민원 발생 학교 대상 감사 실시
- 학습 부교재 선정 후 사례적 성격의 금품 수수 지속 단속
- 학교발전기금, 교재.교구 등 금품 제공 등
- 교과별 연수 경비, 회식비, 기타 기념품 수수 등

o 부조리 발생시 특별조사 및 감사 실시 후 관련자 엄중 문책
- 부조리 발생 여지나 징후가 있을 때 : 특별 장학 실시
- 부조리 발생 학교 : 기관, 학교장에게 조치 및 징계
- 부조리 관련 교원 : 개인별 비리 및 관련 정도에 따라 엄중 조치

o 검.인정 도서 및 학습 부교재 선정을 위한 금품 및 향응 제공 등 부조리를 야기하는 발행인에 대하여는 사직 당국에 고발 등 강경 대응 조치 강구

다. 협조사항

o 학습부교재 관련하여 위의 부적정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단위학교 학습부교재 리베이트 근절 대책 수립하고, 사전 예방활동을 강화: 학기별 1회 학교별 자체 연수 실시
o 학교에서 부교재 구입으로 학부모에게 과중한 부담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함
- 구매 후 거의 활용하지 않는 부교재 또는 과제제시, 자율학습용 부교재 등 일괄 구매 유도 행위 등

6. 에듀페이

1 전북에듀페이 지원

도내 학생들에게 초등학교 입학부터 고등학교 졸업 때까지 교육과정 단계별 교육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에게 학업 지속을 위한 교육비를 지원하여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경감하고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자 함

2 배경과 목적

- 전북지역 인구 및 학령인구 감소 위기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학부모의 교육비 부담 경감 및 교육의 공공성 강화
- 학생들의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 향상 및 진로활동 지원
-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복귀 지원

4 사업 내용

1) 지원대상: 도내 국·공·사립 초·중·고·특수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2) 지원시기: '23년부터 '24년까지 2개년에 걸쳐 순차적 지원

3) 지원내용

구분	내용	지원대상	지원금액	지원방법
입학지원금	1학년 입학생에게 입학에 필요한 물품 구입비 지원	초1 중1·고1	30만원(연1회) 20만원(연1회)	현금 (계좌입금)
학습지원비	학생이 교육활동 과정에서 필요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	초2~5, 중2·고2	10만원(연1회) 20만원(연1회)	체크카드 (바우처)
	학교 밖 청소년의 학업 지속 및 복귀 지원을 위한 학습 물품 구입 및 활동비	학교 밖 청소년 9~15세 16~18세	매월 5만원 매월 10만원	체크카드 (바우처)
진로지원비	학생의 자기주도적인 진로탐색 및 진로체험 등 다양한 진로교육 활동에 필요한 비용 지원	초6 중3 ·고3	15만원(연1회) 30만원(연1회)	체크카드 (바우처)

*빨간색 글씨는 2024년도 지원 확대 대상

7. 감염병 예방 교육

1 감염병 전파(확산) 방지

학교는 여러 학생과 교직원이 밀집되어 있어 감염병에 취약합니다. 학생이 열이 나거나 기침을 많이 하는 상태로 등교하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다른 친구들에게 감염병을 전파 시킬 수 있습니다. 감염병은 누구나 걸릴 수 있으므로 단체생활에서 서로의 입장을 배려하여 감염병 발생을 조기에 차단합시다.

2 주의해야 하는 감염병

인플루엔자(독감),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수족구병, 홍역, 백일해, 노로바이러스, 결핵, 코로나19, 유행성각결막염,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등

3 주요 감염병 임상증상 관리 및 등교중지 안내

감염병	임상증상	관리 및 등교중지 안내
코로나19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 5일간 등교중지 권고 – 회복을 위해 충분한 휴식을 취하도록 권고함
인플루엔자 (독감)	발열, 두통, 근육통, 인후통, 기침, 객담	○ 출석인정 등교중지 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해열제 없이 정상체온 회복 후 24시간이 경과할 때 까지. (단, 해열제를 투약한 경우 마지막 해열제 투약 시점부터 48시간이 경과해야 함.) ○ 감염기간: 증상 발생 1일 전부터 5일까지
홍역	발진, 발열, 기침, 콧물, koplik 반점	○ 전파경로: 호흡기 분비물 등의 비말 또는 오염된 물건을 통함 ○ 전염성이 매우 강하며 항체가 없을 경우 90% 이상이 감염됨. ○ 감염기간: 피부발진 발생 4일 전~발생 후 4일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볼거리)	이하선 부종, 발열, 두통, 근육통	○ 전파경로: 타액, 비말을 통한 직접 전파, 타액과 비말로 오염된 물건을 통한 전파 ○ 감염력이 높기 때문에 전파방지를 위하여 증상 초기부터 증상 후 5일까지 가정에서 안정 가료.
수두	피부 발진, 수포, 발열, 피로감	○ 전파경로: 직접전파-비말, 타액, 수포액의 직접 접촉 ○ 감염기간: 발진 1~2일 전부터 모든 피부 병변에 가피가 생길 때까지
수족구병	발열, 손·발바닥·구강 내 수포 및 궤양	○ 전파경로: 분변 경구 전파, 비말감염, 매개물에 의한 간접전파 ○ 감염기간: 발병 후 7일간 가장 전염력 강함. 피부 병변(수포)에 가피가 형성될 때 까지
유행성 각결막염	충혈, 안통, 이물감, 많은 눈물, 눈곱, 눈부심, 결막하출혈	○ 전염력이 강한 눈병의 경우 학교 내 유행 가능성 높으므로 주의 필요 ○ 감염된 경우 수건이나 개인 소지품등은 혼자만 사용. ○ 안질환에 걸린 경우 안과진료를 반드시 받기

수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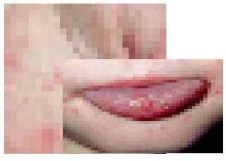
수족구

유행성 이하선염

홍역

유행성 눈병

4 법정 감염병 의심 및 진단시 등교중지 안내

※ 학생이 법정 감염병에 걸려 등교중지 한 경우에는 출석으로 인정합니다.

병 명	초 기 증 상	등 교 중 지 기 간	감염병에 걸리면?
코로나19	발열, 기침, 인후통, 두통 등	**검사일로부터 5일**	**① 담임선생님께 연락** **② 병원진료** **③ 가정격리(등교중지)** **※ 병명과 치료 및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 또는 진단서를 학교에 제출 (결석처리하지 않음)** ※ 학생의 상태에 따라 등교중지 기간 및 질병 상황이 변할 수 있습니다. ※ 학생이 예방접종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가까운 병의원에서 접종을 받아 가급적 질병에 걸리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수두 / A형간염 / 인플루엔자)
신종플루	발열(37.8도 이상)기침, 목아픔, 콧물, 코막힘 중 1개 이상	**의심되어 타미플루 처방시 1주일간 등교중지**	
홍 역	발열 발진, 구강점막에 좁쌀모양의 흰점	**발진 발생 전 4일전~발진 후 5일까지**	
유행성 이하선염	발열, 귀밑이 부어오름, 식욕부진	**귀밑의 부어오른 것이 가라앉을 때까지**	
수 두	발열과 동시에 발진, 수포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발진 하루 전~7일간)**	
유행성결막염	충혈, 안구통증, 눈부심	**의사가 등교해도 된다는 진단을 받을 때까지**	
풍 진	가벼운 감기증상, 발열과 발진	**모든 발진이 딱지가 될 때까지**	
결 핵	피곤, 기침, 체중감소, 식은 땀	**치료시작 후 2주까지**	
일본 뇌염	몸이 노곤하고 고열	**급성증상이 완전히 나을 때까지**	
A형 간염	고열, 권태감, 식욕부진, 오심, 복통, 황달	**감염자의 경우 증상 발생 후 2주간**	

▣ 등교 중지 절차

① 가정에서 37.8℃이상의 발열 및 감염병이 의심될 경우 등교하지 않고 담임교사에게 연락 후 병원진료를 받도록 합니다.

② 감염병 진단을 받은 경우 담임교사에게 감염병 발생 여부를 알립니다.

③ 증상 발현 후 학교나 학원에서 집단 발병을 예방하기 위해 일정 기간 등교하지 않습니다.

○ 법정 감염병 또는 전염력이 강한 질병 예시
- 인플루엔자(독감), 코로나19, 수두, 유행성이하선염(볼거리), 수족구병, 홍역, 백일해, 결핵, 노로바이러스, 유행성각결막염, 결핵, 마이코플라즈마폐렴 등

▣ 등교 중지시 출석 인정 안내

★ 병명과 격리기간이 명시된 의사 소견서(또는 진료확인서) 제출시 출석인정 가능 ★
- 등교중지기간은 의사 소견에 따름
- 감염병 의심시에도 확진시까지 의사 소견에 의해 출석인정가능

8. 비만 예방 교육

1 소아 비만 위험성

2 청소년 비만의 관리 원칙

비만이 각종 질병을 유발하여 자신의 건강을 해치기 때문에 자신의 몸을 진정 **사랑**하는 의미에서, 자신의 **건강**을 위해 체중조절을 시작해야 합니다. 단순히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창피함 때문에 살을 빼야 한다는 강박관념으로 체중조절을 한다면 모든 순간이 괴롭고, 체중조절에도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합니다. 체중조절은 몸이 건강해지고 가뿐해지는 즐겁고 유쾌한 경험이 되어야 합니다.

★ 체중조절 8단계

1) 자신의 비만도 알기- "난 비만일까?" ☞ **표준체중=[키(cm)-100]× 0.9**

비만도	10-20% 미만	20-30% 미만	30-50 미만	50% 이상
판 정	과체중	경도비만	중등도비만	고도비만

2) 비만의 원인 파악하기 - "왜 비만이 되었을까?"
3) 목표체중 정하기 - 1주일에 0.5Kg씩 한 달에 2Kg 감량이 이상적~
4) 생활습관 계획 세우기 - 실천할 수 있는 계획을 작은 것부터 시작 !
5) 생활습관 변화를 위한 노력 - "**20일 프로젝트**"
   ☞ **습관이 바뀌고 몸에 변화가 생기려면 최소 20일을 지켜야 한다!!**
6) 체중조절 계획 알리기 -주변의 격려와 도움. 가족, 친구와 함께 운동하라.
7) 평가하기 -체중조절을 위한 자기 행동이나 변화를 꾸준히 평가
8) 원하는 체중 건강하게 유지하기

9. 청소년 흡연 예방 교육

1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1차 흡연 : 흡연자 본인의 피해

- 백내장, 치매, 류마티스 관절염, 췌장염
- 폐암. 유방암, 신장암, 심장병
- 우울증, 만성 스트레스, 정자 손상 등 초래

2차 흡연 : 비흡연자의 간접흡연 피해

- 우울증, 당뇨병, 고혈압, 동맥 손상
- 성대 손상, 유방암 등

3차 흡연 : 옷.벽면에 붙은 연기로 인한 피해

- 실내 유해물질과 결합 - 발암 물질 생성
- 어린이, 유아, 태아에게 피해 집중
- 니코틴 중독, 태아 폐 발달 저해, 천식 등

흡연 아빠 자녀들 백혈병 위험 15% 높다

하루 20개비 이상 피우면 자녀의 암 발생률 44% 높아...

아빠가 담배를 피우는 자녀들은 아이들에게 흔한 백혈병에 걸릴 위험성이 적어도 15% 높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호주의 텔레손 어린이 건강조사연구소 연구팀은 급성 림프구성 백혈병(ALL)을 가진 어린이 약 400명의 가족을 대상으로 부모의 흡연 실태를 조사하고, 이들 가족과 백혈병이 없는 같은 나이 아이들 800명의 가족을 비교했다.

그 결과 아이들 생각에 아빠가 늘 담배를 피우는 것으로 여기는 아이들은 백혈병에 걸릴 가능성이 15% 가량 높았으며, **아빠가 하루에 적어도 20개비를 피우는 아이들은 암 진단 가능성이 44% 높게 나타났다.** 수치가 15% 높아지는 것은 20만 명당 6명이 걸리는 경우에서 7명으로 늘어난다는 것을 뜻한다.

<2011.12.15.자 코메디닷컴뉴스 발췌>

2 청소년 흡연의 영향

가. 청소년 흡연은 두뇌 활동에 영향을 주어 기억력과 성적이 떨어집니다.
나. 청소년 흡연은 니코틴 중독이 심하고 금단현상이 쉽게 나타나 금연이 어렵습니다.
다. 청소년 흡연은 키 성장을 방해하고 폐를 비롯한 신체 장기에 무서운 병을 일으킵니다.

3 청소년 흡연 예방을 위한 가족의 역할

가. 부모님께서 흡연을 하는 경우, 강한 의지로 금연을 실천하는 모습을 보여 주십시오.
나. 자녀에게 혹은 가족에게 담배 심부름을 시키지 않습니다.
다. 자녀가 함께하는 장소에서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 간접흡연과 3차 간접흡연의 피해를 입게 됩니다.
  - 어른이 되면 담배를 피워도 되는 것으로 인식하게 됩니다.
라. 자녀가 담배를 피우는지 잘 관찰하시고 자녀에게 관심과 사랑을 보여 줍니다.

10. 약물 오남용 예방(마약 예방)

1 자녀와 함께하는 학부모 마약 예방 교육 자료 안내

정부 발표에 의하면 최근 10대 청소년이 마약류를 투약하거나 직접 유통에 가담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의 소중한 아이들을 마약류의 위험에서 지켜내기 위하여 예방교육 및 사법당국의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리며, 학부모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법무부 및 경찰청에서 개발한 교육자료를 안내하여 드립니다. 교육자료는 교육부 '학생건강정보센터(https://schoolhealth.kr)'의 자료실과 법무부 '이로운 법 (https://lawnorder.go.kr)'에 탑재되어 있어 누구나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자녀와 함께하는 마약예방교육 자료 ◈

유형	분량	학교급	제목	개발처
동영상	90초	중, 고	마약류 예방 동영상 (5종)	경찰청
	8분	초	위험한 선택, 마약떡볶이	법무부
	10분	중, 고	아차하는 순간, 마약의 길	
이야기책 (동영상을 책형태로 제작)	30쪽	초	위험한 선택, 마약떡볶이	
	30쪽	중, 고	아차하는 순간, 마약의 길	
쇼츠영상	50초	초중고	마약끊고 사람답게 살고싶어요	
	50초	초중고	마약하기 전으로 되돌리고 싶어요	
	50초	초중고	마약중단, 정말 힘들어요	
	50초	초중고	무서운 마약중독과정	

아울러, 마약류로 인한 어려움을 겪으시게 되실 경우 아래와 같이 도움받을 곳을 안내하여 드리니 필요시 이용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학생 마약관련 신고 및 상담채널 ◈

구분	기관	신고 및 상담채널
신고, 수사	검찰	1301
	경찰	112
재활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02-6929-3192
마약중독치료	인천참사랑 병원	032-572-9410
	국립부곡병원	055-536-6440
	국립법무병원	041-840-5400

※ 마음을 털어놓고 싶은 학생들은 365일 24시간 무료 익명채팅 상담 **'다들어줄개'** 접속 ▶ ① '다들어줄개' 앱, ② 카카오톡 플러스친구, ③ 페이스북 메신저, ④ 문자(1661-5004)

11. 미세먼지 대응 방안

1 미세먼지란?

대기 중에 떠다니거나 흩날려 내려오는 10㎛ 이하의 입자상 물질
- ▸ 미세먼지(PM10):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10㎛ 이하의 먼지 (10/1000mm 보다 작은 먼지)
- ▸ 초미세먼지(PM2.5): 대기 중에 부유하는 분진 중 직경이 2.5㎛ 이하의 먼지 (2.5/1000mm 보다 작은 먼지)

2 미세먼지 실시간 농도 확인

스마트폰 앱 'airkorea', '우리 동네 대기정보' : 미세먼지 농도 확인, 예·경보 알림 수신 신청

3 미세먼지 발생 시 7대 행동 요령

1) 외출은 가급적 자제하기: 야외모임, 캠프, 스포츠 등 실외활동 최소화
2) 외출 시 보건용 마스크(식약처 인증) 착용하기: 폐기능 질환자는 의사와 상의 후 마스크 사용권고
3) 외출 시 대기오염이 심한 곳은 피하고, 활동량 줄이기
4) 외출 후 깨끗이 씻기: 샤워하고, 특히 필수적으로 손·발·눈·코를 흐르는 물에 씻고 양치질하기
5) 노폐물 배출 효과가 있는 물, 항산화 효과가 있는 과일·야채 등 충분히 섭취하기
6) 환기, 물청소 등 실내 공기질 관리하기
7) 대기오염 유발행위 자제하기: 자가용 운전 대신 대중교통 이용, 폐기물 태우는 행위 등 자제하기

4 고농도 미세먼지 발생 시 민감군 질병결석 인정

1) 적용대상: **의사의 진단서 또는 의견서를 통해 인정된 기저질환(천식, 아토피, 알레르기, 호흡기질환, 심혈관질환 등)을 가진 민감군 학생**
   ※ 미세먼지와의 유관성이 드러나는 의사 소견서 3월에 학교에 제출한 학생에 한함.
2) **질병 결석 인정조건: 등교 시간대(예: 오전 8~9시) 거주지 또는 학교 주변 실시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이상이며, 학부모가 수업 시작 전(8:50 이전) 학교에 사전 연락(전화, 문자 등)한 경우**

◈ 미세먼지 예보제

*예보횟수 : 1일 4회 (오전 · 오후 5시, 11시)		예 보 등 급(㎍/㎥)				
		좋음	보통	나쁨	매우나쁨(주의보)	경보
예보 물질	미세먼지(PM_{10})	0 ~ 30	31 ~ 80	81 ~ 150	151(150) 이상	300 이상
	초미세먼지($PM_{2.5}$)	0 ~ 15	16 ~ 35	36 ~ 75	76(75) 이상	150 이상

12. 교육과정 성찰 중심 학교평가

1 추진 근거

○ 교육감은 교육행정의 효율적 수행 및 학교 교육능력 향상을 위하여 그 관할하는 교육행정기관과 학교를 평가할 수 있다.(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3항)

○ 평가 대상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면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평가를 받아야 한다.(초.중등교육법 제9조 제5항)

○ 학교평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1) 교육과정 운영 및 교수.학습 방법
2) 교육 활동 및 교육 성과
3) 그 밖에 학교운영에 관한 사항으로서 교육부장관 또는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12조 제2항)

2 학교평가 지표

영역		평가지표
공통		① AI디지털 수업 활성화(기반 구축, 에듀테크 활용 역량 강화 등)
		② 수업혁신(수업 전문성 신장 연수 이수, 수업나눔 실천 등)
		③ 교육활동 보호(교원 업무 경감 노력, 교육활동 침해 예방 교육 실시 등)
		④ 학력신장 노력(맞춤형 학업성취도 자율평가 참여, 기초학력 진단 및 수준별 맞춤형 교육 내실화 등)
		⑤ 진로·진학 교육 활성화
선택	미래	⑥ 체육·예술교육 활성화
		⑦ 자유학기제, 고교학점제 운영 내실화(중등)
	책임	⑧ 독서·인문교육 강화
		⑨ 문화다양성교육 활성화
	안전	⑩ 학생 및 교직원 안전교육 내실화
		⑪ 학교폭력예방교육 및 생활교육 강화
		⑫ 학생중심 상담활동 활성화
		⑬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교육복지 구현
		⑭ 방과후학교 운영 및 돌봄 내실화
		⑮ 학업중단 예방 강화(중등)
	자치	⑯ 학생자치활동 강화
		⑰ 학부모 학교교육활동 참여 활성화
		⑱ 교육활동 전념을 위한 행정 지원
	공동체	⑲ 공정하고 청렴한 조직문화 조성
		⑳ 민주시민교육 활성화
		㉑ 생태전환교육 활성화
		㉒ 인성교육 활성화
		㉓ 인권교육 활성화
		㉔ 역사교육 활성화
		㉕ 평화공존교육 활성화
	협력	㉖ 연계 교육과정 활성화

※ 음영처리된 것은 본교 학교평가위원회에서 선정한 2024학년도 학교평가 지표임

13. 교육과정 중심 학생평가

1 학생평가 패러다임의 변화

2 다양한 학생평가의 방법

3 학생평가 질의·응답

Q. 초등학교에서 학생평가는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나요?

A. 초등학교에서는 결과 중심의 일제형 정기고사(중간고사, 기말고사)를 실시하지 않습니다. 대신 학습의 과정을 지속적으로 파악하여 학생의 성장을 적기에 지원하는 결과와 과정을 함께 중시하는 **과정중심 학생평가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학교에서는 **수업 과정 중에 수행평가 등을 통해 수시로 평가와 피드백이 이루어지며, 그 결과는 형식적, 비형식적 방법으로 가정에 통지**됩니다.

Q. 학교에서 실시하는 학생평가 계획을 미리 알 수 있나요?

A. 학교는 학년초(학기초)에 평가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공시를 통해 학부모에게 공개합니다. 검색창(학교알리미)/학교찾기/공시정보(학년도 선택)/학업성취사항/교과별(학년별) 교수학습 및 평가 운영 계획에 관한 사항

14. 한글책임교육의 이해

1 초등학교 한글책임교육 이해

◦2022 개정교육과정에서는 학생이 한글을 배우지 않았다는 것을 전제로 한글 학습 시작 시기인 1학년부터 중점적으로 한글 교육을 실시합니다.
※ 1, 2학년 국어교육과정 내 한글교육: 129시간
◦한글책임교육 이렇게 실천합니다.
·국어 교과 시간을 통해 자·모음과 결합법칙을 체계적으로 지도합니다.
·한글을 즐겁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한글놀이단원(34차시)'를 신설하였습니다.
·그림책, 동요·동시집, 동화책을 함께 읽으며 한글(문자)에 흥미를 갖게 지도합니다.
·1학년 1학기에는 무리한 받아쓰기, 알림장, 일기쓰기를 지양합니다.

2 한글책임교육 관련 국어 교과서 안내 자료

카드뉴스]>

인공지능(AI) 활용 수학수업 지원시스템

15. 「똑똑! 수학탐험대」 이용 안내

1 「똑똑! 수학탐험대」 이해

○ 교육부에서는 초등학교 1~4학년 학생들의 개별화 학습과 가정에서의 학생 주도적 수학 학습을 지원하기 위해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똑똑! 수학탐험대」를 개발하였습니다.
「똑똑! 수학탐험대」는 학생이 학습한 내용을 인공지능(AI) 기술을 통해 분석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학생에게 맞는 학습 콘텐츠를 추천하고 학습 조언을 제공하는 시스템입니다.

○ 학생에게 이런 점이 좋아요.
- 수학 공부를 재미있게 할 수 있어요.
- AI 분석을 통해 필요한 콘텐츠를 추천해요.

2 「똑똑! 수학탐험대」 활용 방법

○ 사용기기: 일반 컴퓨터 및 태블릿, 핸드폰에서 활용 가능

○ 접속방법
- 누리집 접속: https://www.toctocmath.kr/
  (보안 등을 위하여 크롬, 엣지, 웨일, 파이어팍스 등으로 접속)
- 앱(안드로이드 버전) 다운로드 받아 사용 가능

똑똑!수학탐험대

3 「똑똑! 수학탐험대」 활용 예시

01.	❶ 교과활동	❷ 교구	❸ 자유활동
학습지원기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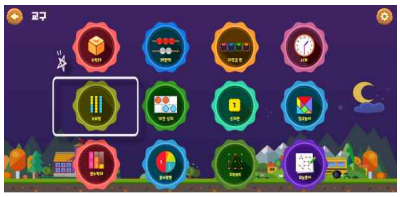	

02.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함께학습지				

※ [알려줘요]-[자료실]-'똑똑! 수학탐험대' 함께 학습지 다운로드

16. 학교생활기록부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안내

1 학부모서비스란?

자녀의 교육정보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학부모가 자녀의 학교를 찾아가지 않아도 자녀의 학교생활을 언제, 어디에서나 PC, 모바일 기기를 통해 한눈에 열람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자녀의 정보는 초등학교에서 고등학교까지 맞춤형 정보를 제공합니다.

2 이용 방법

학부모는 학부모서비스(https://parents.neis.go.kr)에 접속하여 본인인증으로 회원가입 후 아이디 및 패스워드, 디지털원패스,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가능

- 새롭게 개편된 학부모서비스는 신규 회원가입과 자녀등록을 하였을 경우 원활하게 서비스를 이용 가능
- 이전 학부모서비스 회원은 신규 회원가입 후 '자녀등록'를 통하여 자동으로 검증 후 별도 승인 절차 없이 학부모 서비스 이용이 가능

※ 학교에서도 학부모에 대한 정보를 확인하고 승인처리를 지원 가능

- 학부모서비스는 로그인 수단에 따라 학생의 정보열람 항목이 상이할 수 있음

※ 학교생활기록, 대입전형자료, 성적 관련 메뉴, 건강기록, 교육비납입현황 등은 디지털원패스 또는 간편인증으로 로그인하였을 경우 조회 가능

3 학부모서비스 주요 내역

▣ 제공 내용 (92종)

○ 학생정보(15종), 학생생활(23종), 학생건강(11종), 학생상담(3종), 학생교육(19종), 의사소통(9종), 이용안내(12종)

▣ 이용 방법

① 학부모서비스 이용 방법
- ▸회원가입 → 로그인 후 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등록
- ▸인증서가 없을 경우 학부모서비스용 인증서 발급 후 인증서 등록
- ▸내자녀 등록 → 담임교사 승인
- ▸승인 처리 후 자녀 정보 열람 가능

② 학부모서비스 전용 공인인증서 발급 방법
- ▸학생·학부모 인증서 발급 사이트에 접속하여 인증서를 무료로 발급
- ▸이미 공인인증서(은행용 등)를 가지고 있을 경우 사용 가능

③ 담임교사 승인 메뉴
- ▸업무포털 로그인 → 학생/학부모서비스 승인 건수 확인
- ▸나이스 → 학생/학부모서비스 → 학생/학부모승인관리에서 검토 후 승인 처리

▣ 나이스 대국민 서비스 (네이버나 다음에서 검색 가능)

: 나이스 학부모서비스 (neis.go.kr)

17. 학생봉사활동

<table>
<tr><th>구 분</th><th>쪽수</th><th>주요 내용</th></tr>
<tr><td>학생
봉사활동
권장시간</td><td>2</td><td>○ 학생 봉사활동 권장 시간
<table>
<tr><th>구분</th><th>초(5-6학년)</th><th>중</th><th>고</th><th>비고</th></tr>
<tr><td rowspan="2">권장
내용</td><td>2년 통합 8시간
(연간기준 4시간)</td><td>3년 통합 30시간
(연간기준 10시간)</td><td>3년 통합 27시간
(연간기준 9시간)</td><td rowspan="2">전년
동일</td></tr>
<tr><td colspan="3">※ 특정 학년에 편중되지 않도록 연중 지속적 실시 권장
※ 학교교육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권장 시수를 2/3이상 편성 권장</td></tr>
</table></td></tr>
<tr><td>「학생봉사활동
추진위원회」
구성·운영</td><td>4~5</td><td>○ 「학생봉사활동추진위원회」 구성 및 운영
- 학교실정에 맞도록 5명 이상 구성 권장
- 역할
◦ 학교 봉사활동 운영계획 수립 및 운영
◦ 학교교육과정에 편성하는 봉사활동 및 학교 자율로 편성하는 봉사활동 계획 수립
◦ 예시·기준이 없는 봉사활동의 인정 여부에 대해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학교장의 결재를 받아 시행</td></tr>
<tr><td>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인정 기준</td><td>8~9</td><td>○ 개인계획에 의한 봉사활동 지도 절차
<table>
<tr><th colspan="3">준비</th><th></th><th>실행</th><th></th><th>평가</th></tr>
<tr><td>사전교육</td><td>계획서
제출</td><td>학교승인</td><td rowspan="2">⇨</td><td rowspan="2">안전사고 유의,
봉사활동을
통한 학습효과
증진</td><td rowspan="2">⇨</td><td rowspan="2">(학생)
봉사확인서 제출
(교사)
확인서 정리, 평가</td></tr>
<tr><td>프로그램
안내 및
사전협의,
지도</td><td>구체적
활동계획
포함</td><td>사전
학교장
승인 필요</td></tr>
</table></td></tr>
<tr><td>단순 물품 및
현금기부</td><td>16</td><td>○ 단순 물품 및 현금 기부 기준 제시
- 단순 물품 및 현금의 기부는 봉사활동 시간으로 환산하여 인정할 수 없음
예시) 헌옷 모으기, 불우이웃돕기 성금 모금, 폐휴대폰 수거 등
- 단, 학교교육계획에 의해 「사전교육 - 캠페인 - 물품 및 현금 모금활동 - 기부 - 평가」의 학교 프로그램으로 운영하거나, 외부기관과 학교가 연계하여 담당교사의 지도하에 이루어진 경우만 인정 가능(학교에서 봉사활동 계획을 수립해야 함)</td></tr>
<tr><td>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td><td>16</td><td>○ 물품 제작 관련 봉사활동 기준 제시
- 이웃돕기활동 또는 캠페인활동에서 학생의 시간과 노력이 들어간 제작 봉사활동은 인정 가능(학교 연계 필수 조건 아님)
예시) 마스크 제작(캠페인활동), 목도리 제작(이웃돕기활동), 모자 뜨기(이웃돕기활동) 등
- 단, 봉사활동이 「사전교육-제작-평가」 등으로 프로그램화되어 있어야 하며, 물품 제작비 등의 학생 부담없이 학생들은 제작에만 참여한 경우에 한하며 실제로 참여한 활동 시간만을 인정함. 제작 후 학생이 가져가는 경우 인정 불가</td></tr>
</table>

18. 2022개정교육과정

1 개정방향

[그림 1] 2022 개정교육과정의 비전 및 개정 중점과 추진 과제
출처: 교육부, 2022 개정 교육과정 총론 주요 사항 설명자료

2 주요 내용

1. 미래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함양할 수 있는 교육
   - 핵심역량
   - 미래사회 불확실성에 대응할 수 있는 역량 함양: 자신의 학습과 삶을 주도할 수 있는 능력, 언어수리 디지털기초소양, 협력과 공동체의식 함양
2. 학습자의 삶과 성장을 지원
   - 진로연계교육, 교과교육과정, 고교학점제
3. 교육과정 자율성 확대:학교자율시간 운영
4. 교육환경 변화에 적합한 교과 교육과정 개발 및 지원
   - 역량 함양 중심 교과교육과정 개발
   - 빅데이터, AI을 활용한 맞춤형 교수,학습 및 평가활동 지원
   - 교육과정 지원 체제 구축

3 초등학교 주요 개정사항

1. 입학초기활동 내실화
2. 안전교육 체계화
3. 신체활동 확대
4. 진로연계교육: 입학초기적응활동, 학교급간 연계 및 진로교육 강화
5. 정보교육 강화: 실과 정보, 학교자율시간

19. 개념기반 탐구수업 연구학교 운영

1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연구 학교 운영

▣ 운영 대상 : 한솔초등학교 전교생
▣ 운영 기간 : 2024.3.1.~2026.2.28.(2년)

2 개념 기반 탐구 수업

▣ 개념 기반 탐구 수업 이란?
- 학습자가 탐구과정을 통해 자신의 삶에 적용이 가능한 지식과 역량을 갖추는 개념적 이해를 하도록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깊이 있는 학습을 하도록 안내하는 수업

▣ 개념 기반 탐구 학습 설계 흐름도

3 CCC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모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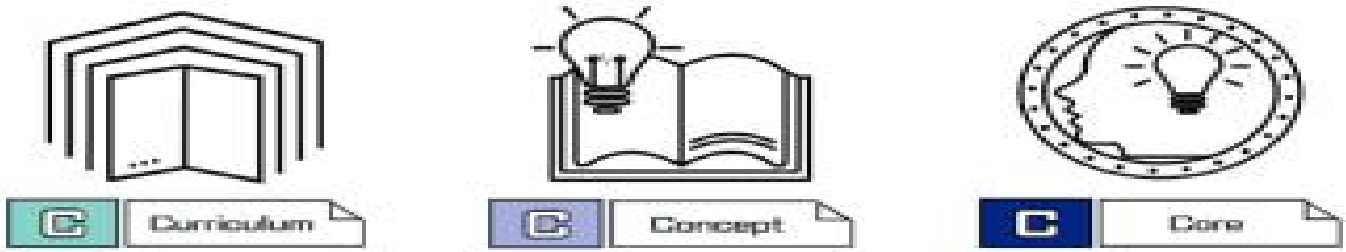

CCC 개념 기반 탐구 수업 모델이란, 교과, 성취기준, 단원 등 교육과정(Curriculum)의 주요 내용과 개념적 렌즈, 개념망 등 수업에서 다루는 개념(Concept) 그리고 학습한 내용을 삶과 연계하고 적용하도록 하는 일반화와 이를 이끄는 안내 질문 등 개념 기반 탐구 수업의 핵심(Core)을 명료화하여 수업을 설계하는 방안입니다.

20. 학교폭력예방교육

1 학교폭력이란?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2조> **학생들이 이른바 '장난'이라고 하는 위의 행동들과, '사소한 괴롭힘'도 학교폭력입니다.**

유형	신체폭력, 사이버폭력, 언어폭력, 따돌림, 금품갈취, 강요, 성폭력 등

2 학교폭력 징후 판별

피해 학생	‣ 학교 가기를 싫어하고, 잦은 지각이나 조퇴 ‣ 운동화, 휴대폰, 태블릿PC, 옷 등이 자주 망가지거나 잃어버렸다고 함	‣ 친한 친구들과 갑자기 사이가 나빠짐 ‣ 용돈을 많이 쓰거나 말없이 돈을 가져감
가해 학생	‣ 갑자기 돈 씀씀이가 커짐 ‣ 전화, 문자 등으로 친구를 흉보거나 친구 그룹이 자주 바뀜	‣ 친구에게 받았다고 하면서 비싼 물건을 가지고 다님 ‣ 화를 잘 내고 공격적 행동을 자주 보임

3 학교폭력 발생 시 학부모 대처법

피해 학생	‣ 도움을 요청하세요. 먼저, 담임교사에게 학교폭력 사실을 알리세요. ‣ 증거를 확보하세요. 문자메세지, 이메일, 음성녹음, 상해진단서 등 ‣ 아이를 응원해주세요. '네가 잘못한 게 아니야'라며 지지해주세요. ‣ 도피하지 마세요. 문제회피, 침묵, 전학, 이사는 해결책이 아닙니다.
가해 학생	‣ 정당화하지 마세요. 애들은 싸우면서 큰다며 정당화하지 마세요. ‣ 피해학생을 탓하지 마세요. 피해학생에게서 폭력의 원인을 찾지 마세요. ‣ 가해 사실을 확인하세요. 아이와 친구, 교사에게 정확한 경위를 확인합니다. ‣ 진심으로 사과하세요. 아이와 함께 사과하고 회복을 지원합니다. ‣ 화해, 재발 방지를 위해 노력해요. 전문가 상담, 봉사활동 등은 성장의 기회를 줍니다.

4 학교폭력 사안 발생 시 처리 절차

▣ **학교폭력 사안 처리**

학교폭력 사건 발생인지 → 신고 접수 및 학교장.교육청 보고 → 즉시 조치 및 초기 사안조사(교내 학교폭력 전담기구) → 사안조사(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 ① 자체 해결 요건충족 및 피해학생 및 보호자 동의 시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

→ ②-1 자체해결 요건 미충족 시 학교폭력심의위원회 개최(교육지원청)

→ ②-2 심의위원회 심의 .의결(피해학생 보호(법 제16조), 가해학생 조치(법 제17조))

▣ **학교폭력 피해학생에 대한 보호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6조)**

심리상담 및 조언, 일시보호, 치료 및 치료를 위한 요양, 학급교체, 그 밖의 필요한 조치

▣ **학교폭력 가해 학생에 대한 조치(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

가. 제1호 : 피해학생에 대한 서면사과	마. 제5호 : 특별교육이수 또는 심리치료
나. 제2호 : 피해학생 및 신고·고발학생에 대한 접촉, 협박, 보복행위 금지	바. 제6호 : 출석 정지
	사. 제7호 : 학급 교체
다. 제3호 : 학교에서의 봉사	아. 제8호 : 전학
라. 제4호 : 사회봉사	

▣ **학교폭력 가해학생 및 학부모 특별교육 반드시 이수해야 하는 경우**

가해학생이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 제2호 ~ 제4호, 제6호 ~ 제8호를 받은 경우

4 학교폭력 여기에 도움을 청하세요.

학교	• 담임선생님, 학교폭력전담기구선생님과 상담하세요. • 교내 학교폭력전담기구에 도움을 청하세요!
위센터	• 지역교육지원청에 있는 위(Wee)센터로 연락하세요. • **정읍교육지원청 Wee센터 (063-530-3082~5, 3087)**
학교폭력신고센터 등	• 학교폭력신고센터 117, 청소년사이버상담센터 1388 청소년폭력예방재단 학교폭력SOS지원단 1588-9128
경찰서	• 경찰서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어요. • 학교전담경찰제도가 있어요. 학교홈페이지에서 학교전담경찰을 확인할 수 있어요.

5 학교폭력은 부모의 관심으로 예방할 수 있어요.

▣ 평소 자녀의 학교생활과 친구 관계에 대해 관심을 갖고 가벼운 대화를 나누세요.

▣ 자녀들에게 사소한 괴롭힘도 폭력이 될 수 있음을 알려주세요.

▣ 자녀가 말하는 학교폭력 사실에 대해 경청하며 아이가 원하는 것을 파악해주세요.

▣ 확인되지 않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서 확대하거나 유포하지 말아 주세요.

▣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최종목표는 자녀가 안전하게 학교로 복귀하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자녀 학교폭력 예방 도움 자료실

- 학교폭력예방 도란도란 홈페이지(**http://doran.edunet.net**)
- 에듀넷 티클리어(http://www.edunet.net→ 사이버폭력예방·정보윤리교육)
- 언어폭력 예방 및 학생언어문화개선 관련 자료(**http://kfta.korea.com**)

21. 아동인권 및 아동학대 예방 교육

1 인권이란?

인권은 말 그대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 권리를 말합니다. 사람이 단순히 사람이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누리는 권리가 바로 인권이며 자신의 성격과 지능, 재능, 양심 등을 발전시키는 것 모두가 인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인권은 인간이 사회생활을 영위해 가면서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도 함께 의미합니다.

▣ 유엔 아동권리협약

아동은 한 인간으로서 고유한 존재이며, 스스로가 권리의 주체임을 알고 적극적인 참여로 자신의 권리를 누리고 온전하게 보장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국제적인 약속이다.

2 유엔 아동권리협약에 제시된 만18세 미만의 어린이와 청소년의 권리

가. 생존권

생존권은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이들이 기본적인 삶을 누리는데 필요한 권리로서 안전한 곳에서 생활하고 충분한 영양을 섭취하는 것입니다. 또한 질병이나 장애가 있을 때 적절한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 등이 포함됩니다. 가정에서는 부모님은 아이들에게 균형 잡힌 식사와 계절에 맞는 의복, 안전한 주거 공간을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나. 보호권

보호권은 아이들이 유해한 것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입니다. 모든 형태의 폭력, 즉 학대와 방임, 차별 등으로부터 보호받는 것입니다. 아이들의 보호권이 지켜지지 않으면 불안, 우울, 비행, 자살 등과 같은 심각하고 안타까운 상황이 벌어지기도 합니다. 부모님들은 가정뿐만 아니라 항상 우리 아이들의 안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다. 발달권

발달권은 아이들의 잠재능력을 최대한 발휘하는데 필요한 성장, 발달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는 아이들의 교육과 관련된 것이며, 여가 문화생활을 누리는 것도 이에 해당합니다. 부모님들은 아이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고 학습을 위한 환경을 만들어 주어야 합니다.

라. 참여권

참여권은 아이들이 자신의 의견을 이야기하고 자신과 관련된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족회의를 통해 아이들에게 의견을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3 가정에서 이렇게 해주세요

아이들은 외모가 다르듯이 다양한 개성과 재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자체만으로도 충분히 소중한 존재입니다. 아이들의 기분과 감정에 귀 기울여 주시고 아이들의 힘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를 위해서는 먼저, 학부모님 스스로가 소중한 존재임을 인식하셔야 합니다.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것을 느낄 때 아이들에게도 그러한 감정을 전해 줄 수 있습니다.

가. 자신을 사랑하고 돌보기

매일 아이들과 생활하다 보면 정작 부모 자신에 대한 투자나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할 시간을 가지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아이들을 돌보는 것은 부모의 당연한 역할이지만 아이 못지않게 자신도 돌보고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취미생활이나 봉사활동도 자신을 돌아보게 하는 방법의 하나입니다. 부모 스스로가 자신을 사랑하고 그런 느낌을 가질 때 아이들에게도 더 많은 사랑을 줄 수 있습니다.

나. 자신의 실수를 인정하기

인간은 누구나 실수를 하지만 부모가 되면 아이들에게 완벽한 모습을 보여 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아이들은 부모의 완벽한 모습보다는 실수하는 인간적인 모습에 더 신뢰합니다. 자신의 실수에 대해 숨기기보다는 아이들에게 자기 잘못을 고백하고 같이 해결해 나가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다. 자신의 감정에 충실하기

부모님들은 화가 나도 아이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주게 될 것을 걱정해서 감정을 숨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숨기는 것이 바람직한 방법은 아닙니다. "○○야,.....했기 때문에 엄마가 속상해."라고 구체적으로 지적해주면서 이야기하도록 합니다. 부모님이 솔직하게 이야기할 때 아이들도 부모의 감정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4 아동학대의 정의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정신적·성적 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한다." 라고 규정하여 적극적인 가해행위뿐만 아니라 소극적 의미의 방임행위까지 아동학대의 정의에 명확히 포함 <아동복지법 제3조 제7호>**

5 '아동학대 범죄'란

▣ 보호자에 의한 아동학대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말한다.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4호)

▣ 형법에 따른 죄: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체포, 감금, 협박, 약취, 유인, 인신매매, 강간, 추행, 명예훼손, 모욕, 강요, 공갈, 재물 손괴 등

▣ **아동복지법에 따른 죄: 신체적·정서적·성적 학대, 유기, 방임 등**

▣ 아동학대처벌법에 규정된 범죄: 아동학대치사, 아동학대 중상해, 상습범

6 아동학대범죄 신고 의무

▣ 누구든지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1항)

▣ 교사 직군은 신고 의무자로서 아동학대 범죄가 의심만 되어도 신고, 신고의무자들은 직무를 수행하면서 아동학대 범죄를 알게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즉시 신고하여야 한다.(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 제2항)

◈ 지역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 성적 학대의 경우 수사기관과 아동보호기관 동시 신고(129 /112)

22. 생명존중 및 자살 예방교육

1 위험신호 알아차리기

가. 행동적 의사표현 - 약이나 위험한 물건 수집
- 의미 있는 소유물 정리
- 자살사이트, 엽기사이트 등에 심취

나. 언어적 의사표현 - 말, 글, 그림, 낙서 등을 통해 자살을 언급

다. 상징적 의사표현 - 성적이 떨어지거나 조퇴, 지각, 무단결석이 잦음
- 평소와 다른 기분 변화나 행동 변화, 식사·수면 상태의 변화

2 가정에서 대처방법

가. 자녀에 대한 세심한 주의와 관찰

나. 부모의 모범적인 생활을 통한 모델링 제시

다. 자녀에게 충분한 정서적 지원

라. 자녀와의 충분한 열린 대화 시간 확보를 통한 정서의 변화 파악

마. 자녀 칭찬 10계명

1) 칭찬할 일이 생기면 즉시 칭찬하라
2) 잘한 점을 구체적으로 칭찬하라
3) 가능한 한 공개적으로 칭찬하라
4) 결과보다는 과정을 칭찬하라
5) 사랑하는 사람을 대하듯 칭찬하라
6) 거짓 없이 진실한 마음으로 칭찬하라
7) 긍정적으로 생각을 바꾸면 칭찬할 일이 보인다.
8) 일의 진척 사항이 여의찮을 때 더욱 격려하라
9) 잘못한 일이 생기면 야단치기보다 관심을 다른 방향으로 유도하라
10) 가끔 자신을 칭찬하라

3 자살을 생각하는 청소년을 대할 때

DO! 해야 할 일	Don't! 하지 말아야 할 일
✔ 다가가세요. ✔ 관심을 가지고 질문을 하세요. "요새 표정이 어두워 보이는구나. 혹시 무슨 일이 있니?" ✔ 판단하지 않고 차분하게 들어줘요. ✔ 자살에 대해 개방적으로 이야기해요. ✔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질문이 자살의 위험을 높이지는 않습니다. "너무 힘들거나 절망적일 때는 죽고 싶다고 생각하기도 한다는데.., 혹시, 죽고 싶다는 생각이 든 적이 있니?" "네가 죽고 싶다고 써 놓은 메모를 봤어. 엄마는 너무 걱정되는구나." ✔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세요. -만일 어느 시점에서 자살을 감행하려는 전조나 불안한 기운이 느껴지거나 아이를 이해할 수 없을 때는, 주저하지 말고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특히 이전에 자살을 시도한 적이 있는 아이가 다시 자살 생각을 하는 경우, 혹은 자살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거나 시도하면 반드시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하세요.	✔ "헉..;;자..살?;; (얼음)" 충격을 받은 듯한 행동하지 말아요. ✔"죽는다고? 에이~ 장난치지 마. 죽긴 뭘 죽어~" 문제가 별것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지 말아요. ✔"내가 너를 위해 무덤까지 비밀로 간직할게." 자살계획에 대해 비밀을 지키지 말아요. ✔"네가 마음 정리할 수 있도록 당분간 연락하지 않을게" 위험한 상황에 빠졌을 때 혼자 내버려 두지 말아요.

4 평소 정신건강을 위해 권해보세요

- 혼자만의 시간을 갖고 나에게 쓰는 일기를 씁니다.
- 즐거운 상상을 많이 하고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흥얼흥얼 따라 부릅니다.
- 거울 속의 자신에게 칭찬과 격려를 해줍니다.

"괜찮아, 아주 잘 해냈어!","난 정말 괜찮은 사람이야."

구조 요청	**생명의전화(1588-9191, www.lifeline.or.kr)** **사랑의전화(1566-2525:www.counse124.com)** 정신건강 위기상담 전화(1577-0199)

23. 청소년 도박문제 예방교육

1 학부모님, 도박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 **도박**은 결과가 불확실한 사건에 **돈이나 가치 있는 것**을 거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아이들의 **도박 행동은 눈에 잘 띄지 않습니다.**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스마트폰의 접근성이 높아져, SNS를 통한 불법 도박광고 및 홍보문자가 무분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예방할 백신이 필요**합니다. **갑자기 친구들과 돈 거래가 잦거나, 주변 사람들에게 맛있는 것(선물 등)을 자주 사주고, 짜증이나 신경질을 내는 등 정서적 문제가 있는지 가정 내에서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박을 하게 되는 동기

- **금전동기** : 쉽게 큰 돈을 따고 싶거나 잃은 돈을 만회하고 싶은 욕구
- **흥분동기** : 스릴과 흥분, 짜릿함, 쾌감과 즐거움을 느끼고 싶은 욕구
- **회피동기** : 현실 문제의 압박감, 우울감, 스트레스를 잊고 싶은 욕구
- **사교동기** : 직장 동료나 주위 친구들과 놀이 및 친목의 욕구
- **유희동기** : 가벼운 즐거움과 여가를 즐기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욕구

2 우리 아이들이 도박문제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청소년 도박행동 자가점검 선별척도를 통해
아이들의 도박문제를 알 수 있습니다.
9개 문항으로, 누구나 쉽게 할 수 있습니다.
https://www.kcgp.or.kr/ 접속 또는 자가점검 바로가기☞

청소년 선별검사

□ 우리 아이들의 도박행동 자가점검 후 점수별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아볼까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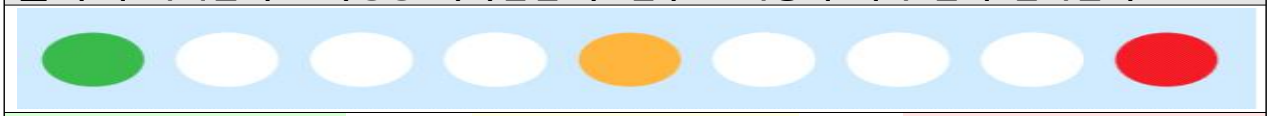

비문제 수준 (0~1점)	위험 수준 (2~5점)	문제 수준 (6점 이상)
도박문제는 없어요. 만약 도박을 자주 한다면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문제 수준으로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이라도 중단해요.**	도박문제가 아주 심각해요 **도박문제 전문상담 ☎1336 전화해요.**

헬프라인 1336은 전국 단위의 도박문제 전화상담 번호(연중무휴)입니다. 도박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도박자 및 가족·지인들은 국번없이 1336으로 걸어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24. 부모님과 함께하는 양성평등교육

1 성차별이란?

생각이나 행동에서 여자와 남자를 공평하지 않게 대우, 성을 차별하여 불이익을 주는 것

【예】① 남자는 씩씩해야 하고 여자는 다소곳해야 한다. / ② 남자는 돈을 벌기 때문에 집안일을 안 해도 된다.

2 성차이

태어날 때부터 서로 다른 생식기를 가지며, 성장하면서 신체적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여자는 XX, 남자는 XY 염색체를 가지는 것

【예】① 여자는 아기를 낳는다. / ② 여자와 남자는 신체 구조가 다르고, 자라면서 그 차이가 더 분명해진다.
③ 남자 대부분은 여자보다 근육량이 많아서 남자가 여자보다 힘이 세다.

3 성 고정개념

남자와 여자의 능력, 특성, 사회적 역할 등에 대해 고정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

【예】남자는 중요하고, 씩씩하고, 용기 있고, 활기찬 일을 하고 여자는 얌전하고, 정숙하고, 섬세한 일을 해야 한다는 사회적 고정관념.

▣ 혹시 어른의 고정관념과 편견으로 아이들을 힘들게 하진 않았나요?

일상에서 자녀에게 하는 대표적인 성차별 발언들 (양성평등진흥원 제공)	
아들에게	**딸에게**
너는 우리 집안의 대들보야	공주같이 예쁜 딸
공부를 잘못하면 어떻게 처자식 먹여 살릴래?	여자니까 옷차림이 단정해야지
사내자식이 뭐 그런 걸 가지고 울어?	여자는 인물만 있으면 공부는 못해도 된다.
사내자식이 통이 커야지.	여자가 선머슴도 아닌데 왜 이렇게 설쳐?
사내다워야 하는 거야	여자애가 칠칠치 못하게

4 가정 내 양성평등은 이렇게

▣ 가정 내에서 부부간에 평등하여야 합니다.

평등한 부부란? 남편과 아내가 성적 구분에 의한 역할 분담이 되어있지 않고, 필요에 따라 돈벌이, 집안일, 육아, 의사결정을 분담하는 부부이며, 1) 남편과 아내의 시간이 동등한 가치를 지니고 2) 남성도 여성과 마찬가지로 설거지나 아이를 돌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며 3) 여성도 남성만큼 사회활동과 여가시간을 가질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부부입니다.

▣ 자녀 양육, 교육에 있어서 아들, 딸을 차별하지 않고 공평하게 대합니다.

1) 자녀에게 격려, 칭찬, 꾸지람 등을 할 때 자녀의 성별과 관계없이 동등하게 하십시오.
2) 예절이나 단정한 용모는 남녀가 모두 갖추어야 할 덕목이라는 차원에서 가르쳐야 합니다.
3) 가정생활을 영위하고 자녀를 양육하는 것은 남녀 공동의 책임이자 역할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4) 진로, 학업 선택 시 남녀영역이 따로 있다는 고정관념을 배제하고, 자녀의 선택을 존중해 주세요

25. 학부모 인성 인권 교육

1 밥상 머리 인성교육이 중요한 이유

1. 스마트폰과 TV보기가 아닌 '대화'를 하는 시간

- 밥상머리교육을 위해선 부모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 합니다. 아이들이 스마트폰을 만지거나 TV를 보지 않도록 지도해야 하죠. 부모님이 먼저 아이에게 학교생활, 교우관계 등에 대한 이야기를 꺼낸다면 대화가 활발해지고, 가족 간의 두터운 친밀감도 형성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빨라지는 언어 습득 능력

- 미국 하버드대 캐서린 스노 박사 연구팀이 3세 자녀를 둔 83개 가정을 대상으로 2년간 아이들의 언어습득 능력을 연구한 결과, 연구기간동안 아이들이 평균적으로 습득한 어휘는 2,000여 개였으며, 그 중 가족 식사 중 배운 단어가 1,000개가 넘었다고 합니다.

2 밥상머리 교육과정

▶1단계: 건강한 영양식단 준비하기(요리의 재료, 영양소)
▶2단계: 재료준비하며 생활의 지혜 배우기(재료 고르는 법)
▶3단계: 함께 요리하며 친밀감 높이기(요리하며 칭찬, 지지와 스킨십)
▶4단계: 완성요리 맛보며 예절과 사회성 길러주기(식사규칙과 예절)

한 상에 둘러앉아 가족이 서로 대화를 나누는 것이 중요합니다. 무엇보다도 교육부와 많은 전문가들의 지침에 따라, 식사 시 핸드폰이나 TV 사용을 줄이고, 한 달에 2번 이상은 가족이 함께 요리를 하는 등 '우리 가족만의 밥상규칙'을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밥상머리 교육을 통해 아이들에게 예절도 가르치고, 가족 간의 대화가 보다 활발해질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26. 성희롱·성폭력·성매매 예방교육

1 성 비위(성폭력 ◦ 성추행 ◦ 성희롱 ◦ 성매매) 예방

아동 성폭력 가해자는 낯선 사람보다 어린이가 아는 사람(친구, 이웃, 가족)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어린이의 집, 학교, 등·하교 길 등 근접해 있는 곳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일상생활에서부터 예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가. 성폭력이란?

일반적으로 (아동 및 청소년 대상) 성폭력이란 성인이나 청소년이 자기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힘의 차이(물리적인 힘과 역할 관계, 연령, 지적 수준, 사회적 지위 등 무형의 힘까지 포함함)를 이용하여 청소년에게 가해지는 모든 성적 행위를 의미한다.

▶ **법률상의 성폭력 개념(아동 .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법률상 성폭력 범죄에 해당하는 행위는

1)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2) 특수강도 강간, 특수강간, 친족관계에 의한 강간
3) 아동.청소년 중 장애인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4) 아동.청소년 중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 및 강제추행
5) 강간 등 상해.치상, 강간 등 살인.치사
6)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7)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8) 아동에게 음행시키거나 음행을 매개하는 행위
9) 아동의 신체에 손상을 주는 학대 행위
10) 아동에게 성적 수치심을 주는 성희롱.성폭력 등의 학대 행위
11) "공중 밀집 장소에서의 추행 및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행위의 그 미수까지를 포함하고 있다.

2 또래 친구끼리 자주 발생하는 성폭력은?

◦ 야한 말이나 농담, 사진, 동영상을 카카오톡, 밴드 등 SNS로 보냄.
◦ 친구의 몸에 대해 놀리거나 특정 신체 부위에 대해 말함.
◦ 장난하는 척 친구의 바지를 내리거나 치마를 들치는 행위.
◦ 장난하는 척 슬쩍 가슴이나 상대방의 생식기를 만지는 행위.
◦ 외모에 대한 별명을 지어서 놀림.

※ 무심코 장난이라고 생각하는 행동들이 성폭력이며 처벌 대상임을 기억해요.

3 학부모 지침 및 준수사항

◦ 의사소통이 잘 되는 가정'이 자녀의 안전을 지킵니다. 항상 자녀들의 말에 귀 기울이고 어떤 이야기든 편하게 말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성(性)에 대해 질문을 할 때 자연스럽게, 즉시 그리고 진지하고 정직하게 가르칩니다.
◦ 성에 대한 느낌과 가치관은 부모님을 보고 가장 먼저 배웁니다. 그러므로 부모님의 사랑하는 모습과 존중하는 태도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성교육입니다.
◦ 자녀가 자주 다니는 곳에서 집을 오가는 길에 위험 요소가 있는지 미리 둘러봅니다.
◦ 아는 사람이라도 원하지 않는 신체 접촉을 하면 참지 말고 단호하게 싫다는 의사 표현을 확실히 하며, 즉시 자리를 피하도록 알려줍니다.
◦ 위험 상황을 알아채고 피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는 표현과 대처 방법을 알려줍니다.
◦ 인터넷 성매매 알선 및 구매 관련 카페나 글을 발견하면 즉시 사이버수사대에 신고합니다.
◦ 부모님은 가정에서 항상 아이들 앞에서 고운 말, 좋은 행동을 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4 성폭력 피해 자녀, 부모님의 대처 방법

가. 성폭력 상황 발생 시 응급조치 요령

○ 손해를 입었을 때는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는 전문기관에 도움 요청
○ 사건이 발생했을 때 입었던 옷, 소지품 등은 중요하므로 변질하지 않게 하려면 코팅되지 않은 종이봉투 등에 포장하여 보관
○ 48시간 이내에 피해 상황 그대로(목욕하거나 씻지 않은 채) 산부인과 병원에서 의료 검사 등 적절한 치료와 조치
○ 피해자의 심리적 불은 등을 고려하여 피해자가 겪은 충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전문심리 상담가의 도움을 받아 심리적 불안 해소

나. 보호자의 행동 가이드라인

○ 성폭력 사건은 가해자의 잘못이지 피해 아동의 잘못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 피해 아동이 안전감을 느끼는 데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물어보세요.
○ 피해 아동의 감정을 충분히 공감하여 자신을 비난하지 않도록 도와주세요.
○ 피해 아동의 질문을 피하거나 사건을 잊도록 강요하지 말고 성폭력 사건에 대해서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다. 보호자가 피해 아동의 수치심과 죄책감을 줄이기 위해 해야 하는 말

○ 네 잘못이 아니야
○ 우리 가족의 문제는 네 잘못이 아니야
○ 네가 안전하도록 보호해 줄게
○ 네가 이야기해 줘서 기뻐
○ 널 보호해 주지 못해서 정말 미안해
○ 그 사람이 너를 속인 거야

5 자녀와 성에 관한 대화 방법

○ 텔레비전 뉴스나 드라마 등과 관련하여 자연스럽게 말할 기회를 찾습니다.
○ 부모의 생각을 일방적으로 전달하기보다는 자녀의 생각을 듣고 소통하도록 합니다.
○ 성 문제에 관한 자녀의 감정을 존중하고, 자신의 감정을 자연스럽게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합니다.
○ 자녀에게 말할 때는 하나의 주제만으로 이야기합니다.
○ 자녀를 지나치게 어린아이 대하듯 말하지 않습니다.

6 성비위 피해 상담 및 지원센터

가. 경찰서 국번 없이 112
나. 성폭력 및 가정폭력 상담소 여성 긴급전화 1366
다. 청소년 긴급전화 1388
라. 사이버수사대 : 경찰청 홈페이지(www.police.go.kr) 접속 후 사이버 범죄 신고

성범죄자 알림e 스마트폰 앱 활용 안내 **「스마트폰 설치 및 이용방법」**

① 앱스토어에서 '성범죄자 알림e' 앱 검색

② 본인인증

③ 지도검색

④ 성범죄자 확인

27. 가정폭력 예방교육

1 가정폭력 예방 교육

가. 가정폭력이란?

가정폭력은 가족 구성원 중의 한 사람이 다른 가족에게 계획적이고 반복적, 의도적으로 물리적인 힘을 사용하거나 정신적 학대를 통하여 심각한 신체적, 정신적 손상과 고통을 주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는 신체적 폭력뿐만 아니라 성폭력(성적 학대), 정서적 학대, 유기, 방임(태만, 의무 불이행), 경제적 학대, 언어폭력 등을 포함한다. 주로 아내에 대한 구타, 자녀에 대한 학대, 노부모에 대한 학대가 대표적인 유형으로 나타난다. 장애인을 둔 가정에서 장애아에 대한 폭력이 자행되기도 합니다.

나. 가정폭력 예방 방법

▣ 화 조절하기

화는 폭력 발생의 직접적인 원인은 아니지만, 화를 조절하는 데에 실패하면 심각한 폭력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화를 조절하기 위해서는 화가 자연스러운 감정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화가 나는 감정이 들게 하는 상황들을 떠올려 정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화를 조절하는 방법을 배워야 합니다.

▣ 스트레스 관리하기

스트레스는 폭력의 간접적인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또한 폭력 발생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서 스트레스를 줄이는 방법을 생각해보고 자신이 할 수 있는 스트레스 관리 방법을 터득하여 스트레스를 다스려야 합니다.

▣ 효과적으로 대화하기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따뜻한 말을 통해 서로에게 쌓인 감정들을 풀고 칭찬을 통하여 따뜻한 분위기를 형성합니다.

▣ 칭찬 한마디 하기

칭찬이 가장 필요하지만 가장 어색한 것도 가족입니다. 칭찬은 부부관계 및 가족관계에 엄청난 힘을 가져옵니다. 칭찬은 모든 관계를 회복시킬 수 있기 때문에 칭찬을 먼저 하는 것은 매우 좋은 방법입니다.

다. 가정폭력 대처방법

- ◦ **혹**시 지금 피해자라면 **신분증, 신용카드, 통장, 갈아입을 옷** 등은 미리 준비해 놓고 급히 챙겨 올 수 있는 장소에 보관합니다.
- ◦ **위**급한 상황을 대비해 조금이라도 비상금을 마련해 둡니다.
- ◦ **위**급상황 발생 시 안전한 장소가 필요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갈 곳과 연락할 사람을 정해 둡니다.
- ◦ **이**웃들에게 폭행당하는 소리가 나면 경찰에 신고해 달라고 부탁합니다.

2 가정폭력 피해지원 기관

▣ 여성긴급전화 1366: 365일 위기 개입 상담(초기지원), 긴급피난처 운영

▣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 지속적인 상담 법률 의료지원 서비스, 자녀와 함께 생활, 학습지원(비밀전환), 자립지원(취업연계)

▣ 가정폭력상담소: 평일 9:00 ~18:00 정기적인 상담, 가해자 교정 및 치료 프로그램 운영

▣ 기타 기관: 아동보호전문기관(1577-1391), 노인보호전문기관(1577-1389), 건강가정센터(1577-9337)

3 디지털성범죄 대응 요령

가. 디지털 성범죄란?

불법 촬영	비동의 유포, 재유포	유통, 공유
치마 속, 뒷모습, 전신, 얼굴, 나체 등 용변보는 행위, 성행위 등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에 업로드, 단톡방에 유포	웹하드, 포르노 사이트, SNS 등의 사업자 및 이용자
유포 협박	**사진 합성**	**성적 괴롭힘**
가족이나 지인에게 유포하겠다는 협박, 이별 후 재회를 요구하며 협박, 유포 협박으로 금전 요구 등	피해자의 일상적 사진을 성적인 사진과 합성 후 유포(소위 지인 능욕)	사이버 공간 내에서 성적 내용을 포함한 명예훼손이나 모욕 등의 행위

나. 피해발생 시 행동요령

▣ 디지털 성범죄 피해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해야 할까요?

피해 촬영물, URL 등의 증거 확보 ⇨ 상담신청 전화 02-735-8994 www.women1366.kr/stopds ⇨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요청

▣ 디지털 성범죄예방교육 자료

카드뉴스	◆ 경찰청, 「사이버 성폭력 예방」 카드뉴스 (* 학교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 「디지털 성범죄 사례 및 수법」 및 「학부모가 알아야 할 디지털 성범죄 예방교육」 (출처:'딱따구리 'http://m.blog.naver.com/woodpecker_official/221868564271)
영상자료	① **젠더온(양성평등교육진흥원)** (http://genderon.kigepe.or.kr/)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콘텐츠(예시) - 양성평등을 위한 카드뉴스 '클릭하지 마세요' - '불법 촬영 영상을 보면 안 되는 이유(김남훈)' 세바시 910회 ◆ 그 외 #불법촬영, #디지털 성범죄, #SNS성희롱 키워드로 컨텐츠 검색 및 활용 가능 ② **에듀넷 티클리어** (http://www.edunet.net/nedu/main/mainForm.do) ◆ 교육정책 > 도란도란 학교폭력 예방 > 예방 활동자료 > 예방 동영상에서 관련 동영상 활용 ◆ 디지털 성폭력 관련 콘텐츠(예시) - 성폭력 국민 의식개선 동영상 「허락」 40초 편집본 - '(성폭력)당신은 디지털 성폭력의 가해자가 되겠습니까? (이선희) ' 세 바 시 강연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신고기관 안내

☎ 전북지방경찰청 전화번호					
여성보호계	063-280-8133	아동청소년계	063-280-8134	여성청소년수사계	063-280-8149

► 전라북도 (디지털)성범죄 전문상담 기관 안내

지역명	시설명	전화번호	운영 주체
전주	성폭력 예방 치료센터 부설(완산구)	236-0151	사)성폭력예방치료센터
	새벽이슬 장애인 성폭력 상담소(완산구)	223-3015	사)행복나눔지원센터
	호남 성폭력 상담소	286-1366	개인
	전북해바라기센터(수사 지원)	278-0117	전북대병원
	해바라기센터(아동-치료지원)	246-1375	여성가족부
	대한법률구조공단	251-4034	대한법률구조공단
	여성긴급전화 1366	063-1366	여성가족부

28. 개인정보 보호

가 개인 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합니다.

나 주민번호 수집 법정주의

◦ 주민번호 처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허용

◦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주민번호 처리를 요구, 허용한 경우
◦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신체, 생명, 재산의 이익을 위해 명백히 필요한 경우
◦ 기타 주민번호 처리가 불가피한 경우로서 안전행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

라 안전한 메신저 사용수칙

①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를 통해 확인하기

메신저를 통해 금전 송금을 요구할 경우 반드시 해당 본인임을 전화를 통해 확인한다.(특히, 전화할 수 없는 상황 등 본인 확인을 피하고자 할 경우에는 일체 대응하지 않는다.) 만약, 금전을 송금한 경우에는 즉시 이체한 은행의 콜센터를 통해 은행 계좌 지급정지 요청을 한 후 비밀번호를 변경한다.

② 메신저를 통해 개인정보를 알려주지 않기

ID, 주민번호, 계좌, 신용카드번호 등 중요한 신상정보는 절대로 메신저를 통해 전달하지 않는다. 필요할 경우 명의도용 확인서비스를 이용하여 회원가입, 실명인증 등의 시도 시 즉각 확인하고, 차단한다.

③ 정기적으로 메신저 비밀번호를 변경, 관리하기

메신저를 이용하는 웹사이트의 비밀번호를 다른 사이트 및 본인의 개인정보와 연관성이 없도록 설정하고, 정기적으로 변경한다.

④ 공공장소에서는 메신저 사용을 자제하기

PC방 등 공공장소에서는 다수의 사람이 다양한 웹사이트에 접속·이용하기 때문에 악성코드 또는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있을 위험성이 높으므로 메신저 등 인터넷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로그아웃 한다.

29. 정보통신 윤리 및 인터넷 중독 예방교육

인터넷 부작용이 의심될 때 해결의 첫걸음은 문제 인식과 아이와의 열린 대화를 통한 부모자녀관계 재정립, 그리고 게임시간 조절입니다.

1. 아이에게 어떤 이야기를 할 지 정확하게 목표를 세워야 합니다.
2. 아이가 겪고 있을 심리적 문제에 대해서 대화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청합니다.
3. 아이의 의견에 공감해주면서 게임으로 인해서 변화된 모습에 대한 부모의 안타까움을 전합니다.
4. 게임의 과다 사용에 대해 지적하거나 조절을 권할 때 나올 수 있는 부정적 반응에 대해서도 흥분하지 않고 들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5. 직접 대화가 어려우면 다른 대안(편지쓰기)도 생각해 봅니다.
6. 모든 것이 실패한다면 전문가 도움을 받도록 합니다.

무엇보다도 중독의 치료에서 예방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아이가 컴퓨터를 접하기 시작할 때부터 인터넷과 게임사용에 대한 부모의 올바른 교육과 적극적인 관심이 중요하며,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예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휴대전화 사용 예절 교육 – 자녀 휴대폰 사용 10계명>

1. 절제력이 생길 때까지 구입을 최대한 늦춰라.
2. 휴대폰 사용 규칙을 함께 만들어라.
3. 자녀 명의로 가입하라.
4. 공부할 때는 반드시 휴대폰을 꺼라.
5. 문자 사용량을 통제하라.
6. 무선인터넷 서비스는 원천 봉쇄하라.
7. 휴대폰을 되도록 학교에 가져가지 말라.
8. 자녀에게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라.
9. 일주일에 한 번 휴대폰을 쉬게 하라.
10. 부모와 교사가 모범을 보여라.

30. 개인형 이동장치(PM) 안전 수칙 안내

1 개인형 이동장치(PM)란?

◈**개인형 이동장치란?**

[도로교통법 제2조 19의2] 전기를 동력으로 사용하는 1인용 교통수단으로, 원동기 장치 자전거 중 최고속도 25km/h미만, 총 중량 30kg 미만인 것

※개인형 이동장치의 종류: 전동킥보드, 전동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 등

2 최근 전동킥보드 관련 사고 사례

◈교차로에서 '킥보드 한 대에 학생 3명 탑승' 비난 폭주 (대전일보, 2023. 03. 28.)

◈전동킥보드 사고 늘어나는데... '사각지대' 여전(대전일보, 2023. 08. 02.)

◈킥보드 사망 사고 느는데... 안전불감증 여전 (KBS뉴스, 2023. 09. 07.)

◈킥보드 피하려다 화물차 전복됐는데... 안 멈추고 '쌩' (SBS뉴스 외 다수, 2023. 10. 11.)

3 학부모가 알아야 할 전동킥보드 면허와 범칙금

면허

◈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반드시 면허 소지

전동킥보드 운전자는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또는 그 이상의 자동차 면허를 받아야 합니다.

취득 연령

◈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 취득 연령 16세

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부터 받을 수 있으므로 16세 미만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수 없습니다.

보호자

◈ 어린이는 전동킥보드 운전 절대 금지

13세 미만인 어린이의 보호자는 도로에서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하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린이가 전동킥보드를 운전할 경우 보호자는 과태료 10만원 부과대상)

범칙금

◈ 무면허 탑승 10만원, 안전모 미착용 2만원, 승차정원 위반 4만원,
인도주행 위반 3만원 등

4 학교 교통안전교육 현황

◈ 초등학교에서는 학생 대상 **연 11시간 이상의 교통안전교육을 지도**합니다.

◈ 지도내용: 통학로 알기, 교통수단(자전거, 대중교통 등)의 안전한 이용법 알기, 안전하게 자전거 타는 방법, 교통 표지판 등 도로 교통법규 알기, 자동차 안전하게 타기 방법 등

- 차이는 존중하고, 차별은 반대하기-

31. 일상적 장애공감문화 정착

1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을 알고 계시나요?

▷제35조(장애아동에 대한 차별금지)

① 누구든지 장애를 가진 아동임을 이유로 모든 생활 영역에서 차별을 하면 안 됩니다.

② 누구든지 장애아동에 대하여 교육, 훈련, 건강보호서비스, 재활서비스, 취업 준비, 레크리에이션 등을 제공받을 기회를 박탈하면 안 됩니다.

③ 누구든지 장애아동을 의무교육으로부터 배제하면 안 됩니다.

④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아동에 대한 유기, 학대, 착취, 감금, 폭행 등의 부당한 대우를 하면 안 되며, 장애아동의 인권을 무시하고 강제로 시설 수용 및 무리한 재활 치료 또는 훈련을 시켜서는 안 됩니다.

2 장애인차별금지법이란?

○ **장애인차별금지법은** (2008. 4. 11 시행)

장애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장애를 이유로 차별받은 사람의 권익을 구제함으로써 장애인의 사회 참여와 평등권 실현을 통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구현을 위해 만들어진 법입니다.

○ **차별금지대상**

장애인 당사자는 물론 장애인을 돕고 있는 사람에 대한 차별을 금지하고 보조견 및 장애인보조기구 등의 정당한 사용을 방해해서는 안 됩니다.

교육(제13조, 14조)

장애인의 입·전학을 거부하거나 강요할 수 없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활동에 장애학생의 참여를 제한·거부할 수 없으며 교육책임자는 교육활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시설물의 접근 및 이용(제18조)

장애인(보조견, 장애인 보조기구 등)의 시설물 접근 및 이용을 금지·거부해서는 안 되며, 시설물의 접근 및 이동에 필요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괴롭힘의 금지(제32조)

모든 폭력으로부터 자유로울 권리를 가지며,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모욕감을 주거나 비하하거나 학대 및 금전적 착취를 해서는 안 됩니다.